

보도자료



기획재정부
MINISTRY OF STRATEGY
AND FINANCE

보도일시	2011. 3. 7(월) 배포시		
배포일시	2011. 3. 7(월)	담당부서	세제실 조세정책과
담당과장	임재현 과장	담당자	최영전 서기관(2150-4111)

제목: 세법 개정안 국회 재정위 의결

- '11.3.7(월)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소득세법 등 정부가 제출한 조세 관련 개정법률안과 의원입법안을 심사하여 별첨과 같이 심의·의결하였음
-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를 개최하여 정부 및 의원발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음
- 이번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법개정 관련 법률안은 향후 법사위 및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임

<별첨> 기획재정위원회 세법 심사결과

※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: 소득세제과(2150-4151), 법인세제과(2150-4171), 재산세제과(2150-4211)

기획재정부 대변인

〈별첨〉 기획재정부 세법 심사결과

Ⅰ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(소득법 §70·§81, 국기법 §81의6, 세무사법 §2, 조특법§122의3 등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성실신고확인제도* 도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‘세무검증제도’를 ‘성실신고확인제도’로 명칭 변경 ○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의 경우 세무사 등에게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받도록 의무화 ○ 대상자 :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금액 이상*인 모든 업종의 사업자** * 각 업종별 기준금액을 시행령에 규정 ** 당초 ‘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자’에서 ‘모든 업종 사업자’로 변경 ○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% 세액공제 (100만원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한도를 규정) - 성실사업자에 준하여 교육비·의료비 공제 허용 - 신고기간 연장(5월말 → 6월말) ○ 부실확인 등에 대한 제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로서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(소득세 산출세액의 5%)를 부과하고, 세무조사 사유에 추가 - 부실하게 확인한 세무사 등도 징계 ○ 세무사의 직무범위에 “성실신고확인업무”를 추가

〈 **개정이유** 〉 자영사업자의 소득세 성실신고 유도 및 세무대리 관행 개선

〈 **적용시기** 〉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
② 미분양주택 임대 세제지원 신설(조특법 §98조의6)

현 행	개정안
<p>< 신 설 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·임대시 양도세 감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대 상) 개정법률 시행일 현재 준공 후 미분양 중인 주택으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다만, 기준시가 6억원 초과 또는 전용면적 149㎡ 초과 주택은 제외 ○ (대상자) ① 건설사가 2년 이상 임대 후 분양한 주택을 취득한 자 ②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자 ○ (임대요건) 개정법률 시행일~'11.12.31 기간 중 임대계약 체결 ○ (감면방법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취득 후 5년 경과 후 양도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: 양도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%를 공제 -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시(위 대상자 중 ①만 해당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: 양도소득세액의 50%를 감면 - 준공 후 미분양주택 양도시 중과배제*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일반세율(6~35%) 및 장기보유특별공제(최대 30%) 적용 ○ (기존주택 양도)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

< 개정이유 >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전세시장 안정을 지원

< 적용시기 > 이 법 시행일 현재 준공후 미분양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③ 임대주택 펀드 세제지원 신설(조특법 §87조의6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p>□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 과세특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대상) 자본시장법상 부동산집합투자기구(Fund), 부동산 투자회사법상 자기관리·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(REITs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기업구조조정형 부동산투자회사는 임대주택 투자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배제 ○ (요건) 자산총액의 일정비율* 이상을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**에 투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조특법 시행령에서 규정 ** 「임대주택법」상 임대주택(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) 중 기준시가 6억원 이하·주거전용면적 149㎡이하 ○ (지원) 거주자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혜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액면가액 1억원 이하 보유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배당소득 5%, 1억원 초과 14% 분리과세 * 선박투자회사, SOC투융자회사 등에 대한 세제지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 ○ (기한) 2014.12.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본시장법, 부동산투자회사법 등에 따라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은 취득한 주택을 3년간 처분금지된다는 점 감안

< 개정이유 > 시중 유동성을 임대주택 공급 부문으로 유도하여 전월세 시장 안정을 지원

< 적용시기 > 공포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

④ 주식의 포괄적 교환·이전을 통한 금융지주회사 설립시 과세특례
요건 완화(조특법 §38, 119)

현 행	개 정 안
<p>□ 주식의 포괄적 교환·이전에 따른 과세특례(조특법§38)</p> <p>① 특례 요건</p> <p>㉠ 1년 이상 사업영위 내국법인간 주식의 포괄적 교환·이전</p> <p>㉡ 교환·이전대가 중 모회사주식이 80%이상으로서 모회사 및 자회사 지배주주는 주식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</p> <p>㉢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업 계속</p> <p>※ ㉡㉢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외</p> <p>② 사후관리 요건 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)</p> <p>㉣ 3년 동안 완전자회사가 사업을 계속</p> <p>㉤ 3년 동안 완전모회사 및 완전 자회사 지배주주가 주식을 보유</p>	<p>□ 금융지주회사 설립시 과세특례 요건 및 사후관리 요건 완화</p> <p>○ 금융지주회사의 경우</p> <p>①-㉣ 요건 적용 배제</p> <p>○ ①-㉡, ②-㉡ 요건 적용 배제 사유* 추가</p> <p>- 법령에 의해 불가피하게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</p> <p>* 현재 교부받은 주식의 1/2 미만 처분, 주주의 사망·파산으로 주식 처분, 적격 합병·분할의 요건을 갖추어 주식 처분 등을 자회사 지배주주의 주식 보유 요건에 대한 예외 사유로 규정</p>

< 개정이유 > 주식의 포괄적 교환·이전을 통한 금융지주회사 설립 지원

< 적용시기 >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주식을 포괄적 교환·이전 하는 분부터 적용